

# 정보사회에서의 국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brary Policy of National in Information Society

이 만 수(Man-Soo Lee)\*\*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한국의 도서관 정책의 변천       |
| 2. 국가 도서관 정책        | 5. 정보사회에서의 한국 도서관 정책 방향 |
| 3. 외국의 국가 도서관 정책 개황 | 6. 결 론                  |

### 초 록

바람직한 도서관 정책이 없이는 도서관 발전과 질 높은 정보문화 향유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도서관은 정책 당국과 도서관계, 도서관학계, 도서관 관련 업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21세기 문화와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한국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① 도서관 정책 자문기구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 ②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 ③ 「국」 수준의 도서관 행정 전담 부서 설치 ④ 도서관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 등과 같은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도서관정책, 국가도서관정책, 도서관정책 자문기구, 도서관행정 전담부서

### Abstract

It is impossible to obtain the growth of library and the information culture of high quality without the desirable policies. Korean libraries have been developed steadi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libraries,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e library business area. For the growth of Korean library culture an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 suggest that we should set up new library policies: (1) establishment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advisory organizations of library, (2) revision of "the library and reading promotion law" and other related laws, (3)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bureau for administration of library, and (4)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zed library.

2001년 3월 26일 Key Words : library policy, advisory organizations of library, exclusive bureau for administration of library

\* 이 논문은 2001년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소 세미나실에서 SOLARS 사용자 협의회가 주최한 「21사이버 라이브러리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필·수정한 것임.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mslee@road.daejin.ac.kr http://203.237.74.9/mslee/)

· 접수일 : 2001. 2. 12 · 최종심사일 : 2001. 2. 24 · 최종심사일 : 2001. 3. 5

## 1. 서론

정보는 학문 증진의 매개체이며, 문화 발전의 중심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의 기본이다. 21세기 현대 사회의 특성을 정보사회, 문화사회라고 한다면 지식·정보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은 정보와 문화적 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은 고도의 지식·정보원의 개발과 연구기능,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비형식적 교육기능, 공공문화 발전과 새로운 지식·정보의 창출 등과 같은 동태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 국가의 발전은 자연 자원이나 인적 자원보다는 인간의 창조물인 정보 자원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가 산업도 기본 구조가 정보 중심의 새로운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많지만 정보야말로 국가 발전의 자원이며 원동력이다. 국가 발전의 필수적인 자원으로의 문헌정보는 학술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며 연구 개발의 진흥을 촉진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정보 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문헌정보 관리를 위하여 장·단기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 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문헌 조사하고, 현재 한국의 도서관 정책 변천 상황을 알아본 후, 정보사회에서의 한국의 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도서관 정책 순환 모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 2. 국가 도서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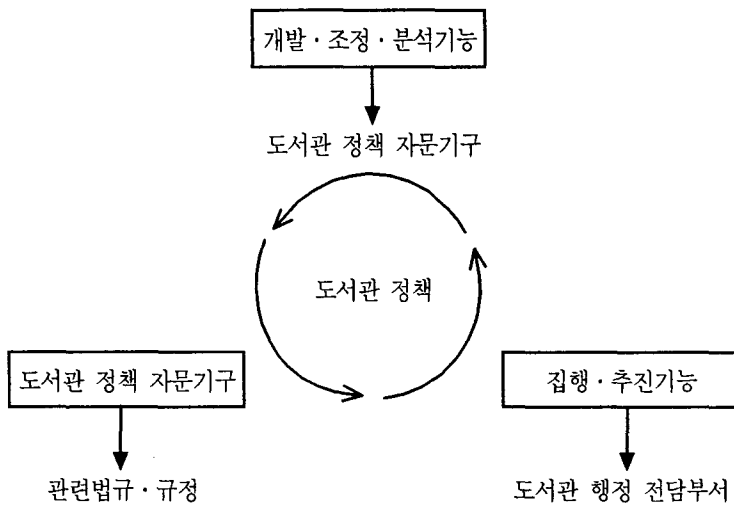
### 2.1 도서관 정책의 의의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면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을 말한다.<sup>1)</sup> 정책은 각 부서의 업무와 경영 행위의 관계나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수행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이미 정해 놓은 정책이 있는데, 이를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1) 최달현, "21세기를 향한 도서관 정책", 《도서관문화》 32권 5호(1991. 9·10), p. 297.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립하는 정책이다. 또한 도서관 정책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적·문화적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도서관 관계 법규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또한 실시 과정을 정해 놓은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도서관 정책은 다음 그림과 같이 순환모형<sup>3)</sup> 구조를 갖는다



<그림 1> 도서관 정책 순환 모형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분석하는 기능을 가진 도서관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식화하고 강제화 하는 기능을 가진 도서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기능을 가진 도서관 행정 전담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중에서 기본방침인 것이다.

도서관 정책이 변천된 경향을 예를 들어보면 정보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도서관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대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1958년에 개최된 「과학정보에 관한 국제회의」<sup>4)</sup> 를 처음으로 들 수 있다. 그후 1963년에는 UN이 주관한 국제연합세계회의에서 「사회과학 문헌정보위원회<sup>5)</sup> 보고서」를 심리하고 국제간에 정보의 흐름을 조직화 할 필요

2) 최달현, 상계서. pp. 297-298.

3) 이용남, "우리 나라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7.

4) ICSI/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tific Information.

5) ICSSD/International Committee for Social Science Documentation/사회과학 문헌정보위원회.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2권 제 1호)

성이 있음을 결정하였으며,<sup>6)</sup> 1963년에는 OECD<sup>7)</sup>에서 「과학정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과학과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기로 하였고, 1967년에는 정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범 세계적인 계획인 UNISIST<sup>8)</sup>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1974년에는 모든 국가는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정책 항목에 삽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NATIS<sup>9)</sup>, 1974년의 IFLA의 UBC<sup>10)</sup> 계획, ISO<sup>11)</sup>의 ISBN과 ISSN제도 도입, 1980년의 GIP<sup>12)</sup> 등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95년에 새롭게 개정된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에도 국가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2.2 도서관 정책의 목적과 목표

도서관 육성 정책은 국가의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며 국가 계획의 하나의 중요한 정책 항목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또한 문헌정보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 전담 부서에서 국가 발전 계획의 한 부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국가와 사회,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국가의 한 제도로서 존재하기 위한 국가 도서관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도서관을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정보 자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다.<sup>13)</sup>

다시 말하면 도서관을 경제 사회 발전의 활력소로서 필수적인 시설이 되도록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서 국민들에게 지식의 향유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도서관을 교육과 연구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존재하는 핵심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정보를 학교와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에서 도서관을 통하여

---

6) J. Meyriat, *Rapport Sur les Techniques Moderns de Documentation dans les Science Social et leu Application aux Pays voie de Development*. paris: ICSSD, 1962.

7)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8) UNISIST/Universal System for Inform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유니스리스트/1973년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시스템, 주요목적은 시스템 내의 자료 개선, 정보전달의 개선, 전문정보요원의 양성, 과학정보 정책 및 국가정보망의 조직,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이다.

9) NATIS/National Information System/국가정보시스템

10)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for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국제도서관연맹.

UBC/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s/국제서지통정

11)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국제표준화기구

12) GIP/General Information Program/세계총합정보유통계획

13) Pierce Butler,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p. 118.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고 보관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도서관을 국민의 평생교육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민으로 하여금 지식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여 정보사회에서 정보부자(information rich)로서 살아 갈 수 있는 역할을 도서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과 가치관 함양은 문헌자료가 그 자원이 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을 창의력의 소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sup>14)</sup>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도서관 목표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한 수단이다. 계획 목표는 유동적일 수 있으며,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변화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가 때로는 설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15)</sup>

일반적으로 도서관 정책의 제1차 목표를 ① 제도의 확립 - 정책 기관의 결정, 문헌정보 개발 위원회의 설치 ② 도서관 협동조직망(Network) 결성 - 국립도서관의 설치, 기능의 분화, 효율화의 촉진 ③ 정보자료의 강화 - 납본 제도의 강화, 분담수집 계획 ④ 표준화 확립 - 조직의 형성, 추진 순위 ⑤ 인적 자원 확보 - 사서직 제도의 개선, 재교육, 교육제도 ⑥ 봉사기능의 강화 - 문화기능의 강화, 정보분석 센터 기능의 강화, Data Center 기능, Basic Access 기능의 강화, 교육기능의 강화 ⑦ 서지의 자동화 - 국가 서목의 자동화, 연속간행물 데이터의 자동화, 주제별 서지의 자동화 등의 7개 항목으로 나눈다.<sup>16)</sup>

### 3. 외국의 국가 도서관 정책 개황

외국에서는 많은 도서관 시설이 전국에 걸쳐 네트워크를 이루어 있어,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1km 이내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교부에 도서관국이 있어 전국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 발전과 봉사의 확대를 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각 지방에 교육위원회가 있듯이 그 지방의 「도서관위원회」가 있어 교육감과 같은 레벨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도서관 세를 징수하기도 한다.<sup>17)</sup> 일본만 하더라도 문부성에 도서관과를 두고 도서관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도서관정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14) Unesco ed. *Life-long Education and Asian Cultural Development*. Paris: Unesco, 1974. pp. 187-195.

15) *Information Policy Objective : UNISIST Proposal*. Paris: UNESCO, 1974. p. 26.

16) 한성택, 한국도서관 정책의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1984. 11.

17) 김세익, "도서관 정책의 빈곤을 비판한다", 《신동아》 통권195호(1980. 11), p. 222.

##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2권 제 1호)

든지, 누구에라도'라는 슬로건을 걸고 적절하고도 섬세한 도서관 정책의 제시와 계획적인 도서관 행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정당은 1970년에 현대사회의 도서관봉사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당별 도서관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18)</sup> 한편 1978년 제5기 전인민대회에서 행한 화국봉의 "각종 유형의 도서관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가 광범위한 대중에게 봉사하는 도서관망을 조직 확대하며----(생략)"라는 연설을 통해 중국의 정책 의지를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국무원과학계획위원회 도서관위원회」와 분야별·지역별 중앙도서관으로 구성되는 「중앙도서관위원회」와 9개 지역단위 「중앙도서관위원회」로 연결되는 조직체를 통해 도서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sup>19)</sup>

국가적인 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도서관 선진국인 미국, 영국의 경우를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1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의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국가 도서관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8년의 「도서관 봉사를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이며, 둘째 1951년에 과학기술정보국을 국립과학재단 내에 설치하여 이를 기반으로 과학정보정책의 기초를 확립한 것입니다. 셋째 1956년에 제정한 「도서관 봉사법」<sup>20)</sup>이고 넷째 1964년에 도서관 봉사법을 개정한 「도서관 봉사 및 건축법」<sup>21)</sup>이다. 그후 1965년에 학술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제정한 「고등교육법」<sup>22)</sup>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시책이다. 미국에서 국가 전체적인 도서관봉사를 위한 시책 중의 하나가 바로 1966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1130호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도서관위원회」와 「국가도서관 자문위원회(NACL)」이었다.<sup>23)</sup> 이 위

18) 최달현, 전게서, p. 299

19) 이경구, "도서관 정책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31권 5호(1990. 9·10), p. 218.

20) Library Service Act, 1956년 6월 19일, 상원통과, Eisenhower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됨/

이 법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이 없어 봉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도서관 봉사를 할 수 있게 함에 있다.

21) Library Services & Construction/1964년에 통과된 법으로 미국도서관의 근대적 발전에 기여함. 도서관 개축과 신축, 도서관 상호협력, 고아원과 병원 및 교도소 등의 수용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규정됨

22) 고등교육법은 학술연구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이 지닌 역할을 인식하고, 그 기관의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1965년 미국에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 후에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학술활동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1년 정도의 시한을 가진 위원회였다. 이 위원회의 사명은 '미국의 도서관이 장차 하여야 할 역할과 국민에게 적절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주목할 것은 「도서관 및 정보과학위원회」를 항구적인 상설기구로서 설치해 달라는 건의였다. 이러한 건의가 대통령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1970년 7월 20일자로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정식으로 「국가도서관 및 정보과학위원회」<sup>24)</sup>가 발족되었고,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도서관 정책 입안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79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도서관·정보봉사에 관한 백악관회의(WHCLIS)」를 개최, 3천명이 넘는 전국의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 「전국 정보정책의 연구·실시」 「전국도서관법 제정의 채택」 등 64개 항의 정책결의를 하였다.<sup>25)</sup> 또한 연방 주도하의 도서관 정책 외에도 의회에 「상하 양원합동 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도서관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도모하고, 의회도서관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며, 주 정부에서도 「주 정부 도서관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발전의 전국적인 체계를 도모하고 있다.<sup>26)</sup>

미국의 도서관 정책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군(County) 등 행정 기관이 출선하여 적극적인 책임 하에 도서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의 정보정책은 1980년대부터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 왔으며, 1993년도에 통신망, 컴퓨터, DB 및 가전기기들이 하나로 연결된 대량의 정보자원을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국가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NII)<sup>27)</sup>을 수립하고, 발달된 정보기술을 공중, 기업, 도서관 및 기타, 정부의 조직에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NII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는 백악관 내에 정보기반전담팀(IIITF)을 설치하여 NII추진을 총괄하며, 연간 10억-2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민간과 정부의 상호협조를 통해 ①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② 정보자원이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

23) 윤영대, "미국의 도서관 정책", 《국회도서관보》 132(1978. 6), p. 14

대통령도서관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ies

국가도서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

24) 국가도서관 및 정보과학위원회/Nation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mmittee/

이 위원회는 14명의 위원과 당연직인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도서관 전문가 5명, 정보과학전문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의 위원들도 교육과 도서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어야 한다.

25) 최달현, 전제서. p. 298

26) 최달현, 상제서. p. 298

27)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념의 확대 ③ 기술혁신 및 새로운 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촉진 ④ 일체적인 대화식 위주의 운영촉진 ⑤ 정보의 안전성과 네트워크의 사회성 확보 ⑥ 지적재산권의 보호 ⑦ 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및 외국과의 조정도모 ⑧ 정부정보에의 접근제공 및 정보조달의 개선 등 같은 내용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sup>28)</sup>

미국의 지식정보화 추진 최근 동향은<sup>29)</sup> 『미국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 정책보고서』 정책 권고 요지를 보면, 21세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요소로서 정보기술을 통해 변화될 10개 분야의 목표<sup>30)</sup>를 제시하였는데, 도서관 관련 목표는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언어에 상관없이 책, 신문, 비디오 등을 컴퓨터를 통해 검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5년간 연방정부가 현재 정보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2배(총 13.7억 달러 추가 투자)를 투자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① S/W산업 ② 정보인프라 확충 ③ 슈퍼 컴퓨터시스템 개발 ④ 정보화 교육 및 정보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등 집중 투자가 필요한 4대 분야를 제시하고, 분야 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였다.

①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초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하며, 특히 대규모 소프트웨어보다는 소규모의 안정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지원 확대

② 정보인프라(인터넷) 확충 연구 : 인터넷망의 성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인터넷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터넷의 확장성을 보장하는 연구 강화

③ 고성능 컴퓨터시스템 개발 : 학술연구의 고도화 지원과 각 기관의 업무수행 고도화를 위해 슈퍼 컴퓨터의 도입·활용을 촉진

④ 정보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및 정보화 교육 강화 : 지적재산권, 전자서명, 여성과 소수민족 등 정보화 소외계층 문제 등 정보기술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구

28) <http://hyomin.donggwi.ac.kr/~yskim/wwwboard3/messages/470.html>

29) <http://web.mic.go.kr/ck21/kor/part3/index12.html>

30) ① 인터넷 : 전세계 10억 명의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 실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며 거리·언어에 상관없이 통신하게 한다.

② 원격교육 : 거리, 연령, 개별일정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게 한다.

③ 전자도서관 : 모든 사람들이 언어에 상관없이 책, 신문, 비디오 등을 컴퓨터를 통해 검색하게 한다

④ 원격의료 : 영상회의를 활용한 컴퓨터진단·치료를 일상화하게 한다.

⑤ 전자상거래 : 소비자가 지역에 상관없이 기업과 직접 접촉하여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기업은 고객의 반응에 즉각 대응하게 한다.

⑥ 재택근무 : 향후 10년 내 미국 근로자 1,500만 명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

⑦ 디자인설계 : 자동차, 건축물 등 복잡한 구조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제조자, 최종사용자가 설계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⑧ 가상실험 : 물리적 공간에 관계없이 가상실험실을 통하여 연구하게 한다.

⑨ 환경 : 정보기술을 통하여 수질 및 대기상태를 원격으로 측정하고 감시·점검하게 한다.

⑩ 전자정부 : 정부의 서비스와 정보를 장소나 컴퓨터 숙달 정도에 상관없이 시민이 접근하게 한다.



확대와 정보기술 활용능력 배양 및 접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 및 산·관·학 협력 확대이다.

### 3.2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의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국가 도서관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50년에 제정한 세계 최초의 「공공도서관법」이고, 둘째 1950년 초에 과학산업연구청이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대출도서관 설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셋째 1962년에 과학기술의 중복 연구를 피하고 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과학기술대출도서관을 설립하였다.

네째 그 후 여러 차례 개정하여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1964년에 개정한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sup>31)</sup>이다. 이 법은 도서관정책기구의 강제 설치와 장관의 공공도서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sup>32)</sup> 이 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반드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국무총리가 모든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한다는 것이다. 때를 같이 교육·과학부 내에 있던 「도서관과」를 「국」 단위로 승격시켜 국가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수상 직속 하에 공식적인 「도서관자문위원회」와 산하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도서관 정책과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다. 다섯째 1965년에는 과학기술정보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국을 교육·과학부 산하에 신설하였고, 1969년에 「국립도서관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섯째 1972년 7월에 제정된 「영국국가도서관법 72」에 따라 대영박물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과학기술대출도서관을 통합하여 1973년에 발족한 영국국립도서관<sup>33)</sup>의 설치이다. 이 도서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서관 전문가를 포함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인데, 이사회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선정하되, 그 중 한 사람은 영국 국왕이 직접 지명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국가중앙도서관의 기능이 국가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영국의 위정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곱째로 도서관 정책자문기관인 「도서관정보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의 설치이다.

그 후 영국 정부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국가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책자료는 ‘신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Building the new library

31) *Public Library and Museum Act, 1964. 7. 31*

32) 최달현, 전제서, pp. 296-304.

33) 영국국가중앙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이 도서관의 특징은 도서관 전문가를 포함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약 한화 4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으로 1980년에 완성되었다.

network)'이란 제목으로 2002년까지 영국 내 공공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정책 자료의 초안은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1997년 2월 도서관 정책 자문기관인 「도서관 정보위원회」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처한 공공도서관이 대처해야 할 전략 마련에 착수하였고, 1997년 10월 'New Library : The People's Network'를 발간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공공도서관들이 국내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계되어야 하며 전자자료의 관리자로서 또한 풍부한 온라인 정보에 대한 통로(gateway)로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정책소관부처인 문화미디어체육부는 1998년 4월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도서관정보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담겨있는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행 안을 만들도록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최종적으로 하나의 방대한 계획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세 부문이란 네트워크, 콘텐츠, 훈련을 말한다.

네트워크(network)에 관해서는 필요시 인터넷에 기초한 공개 광대역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네트워크를 개발할 것과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은 국가표준으로 처리된 제품들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영국 교육부가 개발하고 있는 국가교육망(the National Grid for Learning)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콘텐츠(content)는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이에 맞는 자원을 만들어내며 관리하는 전체적인 구성 안에 관한 것이다. 도서관은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새로운 디지털자료의 창조자로서 또한 개발자로서 중요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Training)에 관해서는 국내 사서들에게 신기술을 가르쳐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구사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정보를 접속하며 정보 안내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실행 프로그램(a rapid-action programme)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신 도서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관(national agency)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도서관들이 정부의 평생교육을 위한 의욕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있다. 도서관을 국가교육망에 연결함으로써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흐름을 확장하고 활발하게 할 것이다. 또한 고도네트워크의 쉬운 접속은 스스로 학습하고 재훈련을 준비하려는 어른들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용 자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신 도서관 네트워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른 중요한 국가문화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유산에 대해 접근을 더욱 쉽고 많

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중망을 통한 원격지 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결실을 맺고, 법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정부 정보를 전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도서관은 단지 통로(gateway)로서가 아니라 각계 각층의 개인과 정부 사이의 핵심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다. 나아가 도서관은 많은 지역 정보의 관리자이며 운영자가 될 기회를 포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 중추(backbone) 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개척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신 도서관 네트워크는 국제 정보사회에서 영국의 옛 부흥기로 되돌아가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다음 세기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서비스 역할에 부가가치를 높여줄 것이며 정보와 교육 세계에 대한 지역에서의 봉사 거점(access point)으로서 호평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지역사회를 포괄한 전체 영국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번영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도서관 정보위원회의 이와 같은 신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영국 내 도서관의 본질과 중대성에 진정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명확한 일정을 가지고 있다.<sup>34)</sup> 한편 영국의 지식정보화 추진 최근 동향은<sup>35)</sup> 『지식주도경제 백서』에 나타나 있다.

#### 4. 한국의 도서관 정책의 변천

한국의 도서관 정책의 변천 상황을 도서관 정책 순환모형 구조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분석하는 기능을 가진 도서관 자문기구,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식화하고 강제화 하는 기능을 가진 도서관 관련 법규와 규정,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기능을 가진 도서관행정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도서관법」은 우여곡절 끝에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10월 5일에 통과되었고, 동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서 공포되었고, 동년 11월 26일에는 「국회도서관법」, 1965년 3월 26일 「도서관법시행령」, 1966년 3월 23일 「도서관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서관문제를 법률로 다루게 된 것이다.

34) <http://library1.nl.go.kr/본문서비스/도서관계/data9904.htm>

35) <http://web.mic.go.kr/ck21/kor/part3/index12.html>.

그후 「도서관법시행령」이 3차례 개정<sup>36)</sup>되고, 「도서관법시행규칙」이 2차례 개정<sup>37)</sup>되었다. 1968년에는 「공공도서관 확충 5개년 계획」이 정부에서 채택된 적이 있었으나, 계획연도도 마치기 이전에 중단되고 말았다.<sup>38)</sup> 1984년 12월에는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sup>39)</sup>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의 직급이 차관급에서 1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회사무총장 산하로 되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된다.

1986년 도서관계는 「도서관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정부 여당에 건의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① 정책 담당부서의 설치 ② 도서관법의 개정 ③ 국립중앙도서관 기능의 강화였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중요사업의 하나로 「도서관법」개정이 채택되는 등 여러 가지 발전 방안도 검토되었다. 그 주용 내용은 ① 도서관법 개정 ② 도서관 행정 전담부서의 설치 ③ 전문직에 의한 도서관 운영 ④ 도서관 시설의 확충 ⑤ 도서관 장서의 확충 ⑥ 운영의 내실화 ⑦ 도서관 상호 협력 체계의 구축 ⑧ 재정지원의 확대 등이며, 장·단기 실천 사항으로 ① 도서관법 개정 ② 도서관행정 전담부서의 설치 ③ 국가대표도서관의 체제 개선 ④ 독서지도의 교육과정화 ⑤ 이동도서관 운영의 확대 등이다.<sup>40)</sup>

그 후 여러 차례 도서관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sup>41)</sup>, 문교부에서 1986년 5월 20일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도서관운영체제연구」라는 주제 하에 도서관법 개정을 포함한 내용을 위탁하여, 1987년에 「도서관체제확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출간하여 도서관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제시하게 하여, 1987년 1월 15일에 도서관법 5차 개정안이 작성되었다.<sup>42)</sup> 동년에 김현자 의원 외 30인의 의원 발의로 도서관법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동년 10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11월 28일에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었고, 1988년 8월 16일 「도서관법시행령」, 1989년 3월 25일 「도서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또한 1991년 3월 8일에는 「도서관진흥법」, 1991년 4월 8일 「도서관진흥법시행령」, 1991년 7월 16일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한편 1994년에는 도서관계, 학계, 도서관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24일에 법률 제4746호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고, 동년 7월 23일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동년 8월 12일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36) 도서관법시행령 개정 3차례(1967.3.27, 1969.11.3, 1977.6.2)

37) 도서관법시행규칙 개정 2차례(1969.7.19, 1975.11.5)

38) 윤영대, “우리 나라 도서관 정책의 현황”, 《도협월보》 19권 8호(1978. 10), p. 7.

39) 국회사무처직제, 1984년 12월 14일, 국회규칙 제30호, 전문개정

40) 민주정의당 국책연구소 「도서관발전 방안」(미간행)에서 발췌한 것임.

이경구, “도서관 정책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31권 5호(1990. 9·10), p. 9에서 재인용.

4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 도서관법 법령집」. 서울 : 동협회, 1998. p. 2

도서관법 개정안 작성, 1차(1976.10.5), 2차(1979.10.2), 3차(1981.3.30), 4차(1981.8.10)

42) 5차 개정안 작성위원 : 박대권, 유형승, 이용남, 이정희, 조원호, 한상완,

5차 개정안 작성자문위원 : 엄대섭

그후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은 여러 차례 일부 개정<sup>43)</sup>되었는데, 도서관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금에 관련 된 제9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조항이 「기금관리기본법<sup>44)</sup>」의 개정(1999. 12. 31, 법률 제6101호)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삭제되었다.

한국의 도서관 행정 담당부서는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하여 문교부 사회교육국 사회제도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90년 1월 3일에 문화부가 신설된 후 1991년 4월 8일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공포되어, 문화부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일부의 관할과 함께 도서관 정책이 정부 최초로 도서관행정 전담부서로 「어문출판국」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93년 3월 6일에는 문화체육부<sup>45)</sup>가 발족되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 따라 기구가 축소될 때, 도서관박물관과로 통합되어 업무를 그대로 맡아왔으며, 1998년 2월 28일에 문화관광부가 발족되어 종전처럼 문화정책국의 도서관박물관과에서 ①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지도에 관한 사항 ③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의 지도감독·박물관 발전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④ 문화의 집·각종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등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은 문화부에서 주관하나, 도서관행정 담당 부서는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구 교육부) 주관 하에 있고,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일부는 교육청 관할에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일부는 문화관광부, 전문도서관의 일부는 중앙행정기관, 새마을이동문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어 도서관 행정이 다원적이다.

도서관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가 법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7년에 개정된 도서관법 8조에 의하여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서관 기능의 효율적·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에 관하여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교부 장관 소속 하의 「도서

43) <http://my.netian.com/~ilyjs/law.htm>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69호(교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 1.21 법률제5667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101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26호

44)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91.12.31 법률제4461호

일부개정 94. 3. 24 법률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99. 12. 31 법률 제6101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45) 문화부와 청소년체육부의 통합으로 발족됨.

관발전위원회」이다. 「도서관발전위원회」는 1989년 9월 7일에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도서관 발전 정책 분과위원회」 「도서관정보협력망 분과위원회」 「도서관진흥기금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sup>46)</sup>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편 2000년 1월 12일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를 삭제하여, 정부가 개혁의 일환으로 도서관 정책 자문기구 중의 하나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 기구의 폐지는 도서관 행정 담당 부서도 다원적으로 위상도 불안할 뿐 아니라 도서관 법규나 규정도 일선 행정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아쉬운 정책이다. 공공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민간위탁, 학교도서관 운영의 부실, 대학도서관과 전산소의 통합에 의한 위상의 변화, 전문도서관에 대한 정책 부재와 무관심 등으로 인해 도서관 정책이 제대로 수립·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sup>47)</sup>

2001년도의 문화관광부의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의하면 ① 문화예술정보화 ② 문화유산정보화 ③ 문화산업정보화 ④ 관광정보화 ⑤ 체육정보화 ⑥ 청소년정보화 ⑦ 도서관정보화 ⑧ 정보화 여건조성 등의 추진 내용이 있다. 목표로는 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보화 추진 및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화 추진 ② 문화산업 및 관광분야의 정보화 강화를 통한 문화관광 진흥 ③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 도서관 정보화 추진 ④ 문화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 여건조성 사업 확대 추진 ⑤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 관련 정보화 과제의 지속적 발굴 및 대 국민서비스 확대이다. 2001년도의 예산 계획을 보면 총예산 114,301백만 중에서 도서관정보화 부분은 재원이 국비로 68,900백만으로 용역개발비 14,193백만, H/W 구입비 766백만, S/W 구입비 4,500백만, 통신망 21백만, 기타 49,420백만이다.<sup>48)</sup>

이 정책 중에서 특히 도서관정보화 사업의 경우를 보면 전자도서관 DB를 구축하였고, 정보화 여건 조성사업으로는 한글맞춤법 DB 구축과 국어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했다.<sup>49)</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서비스 요금에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NII의 정보자원이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도록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확대가 우리에게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민간연구가 상호협조 되어져야 할 것이다.

46) 성기선, “도서관 발전 정책 기본 방향”, 《문교행정》 95호(1989. 11), p. 66.

47) 이용훈, 전계서, p. 13.

48) 문화관광부, 2001년도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0. 9, p. 143.

49) 문화관광부, 2001년도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0. 9

## 5. 정보사회에서의 한국 도서관 정책 방향

정보화 시대의 한국 도서관 정책의 방향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할 수 있지만 본 고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도서관 정책 순환모형 구조를 중심으로 논하며, 도서관 정보화에 대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 정책 자문기구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

도서관 정책 자문기구는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고 조언하며, 도서관 협력망 등 문헌정보 활동에 관련된 각 부처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 미국의 NCLIS 활동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다.

도서관의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분석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 산하에서 도서관 및 독서 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계획 등 도서관발전 기본정책, 도서관 협력 망의 구성 및 운영,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과 문고의 설립·운영 및 시설의 확충, 기타 도서관 정책과 독서진흥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 하는 사항 등의 정책 자문을 담당하고 있었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와 지방자치 단체의 산하에서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였던 「지방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도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와 함께 통·폐합 조치에 따라 폐지되었다. 물론 그 동안 동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자문을 도외시하거나 자문기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문기구를 통한 도서관 정책을 수립과 집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현재 폐지된 위원회를 대체할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관계 당국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법적인 뒷받침과 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하여 자문기구를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가칭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년 1회 정도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국회와 행정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식적인 자문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대안으로 한국도서관협회가 년 1회(전반기·후반기) 정도 가칭 「도서관발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자문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도서관 발전은 공식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서관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법은 1963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24년이 지난 1987년에나 개정이 가능했다. 그 동안 도서관에 대하여 정책 당국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현재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1991년 3월 8일에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성안한 「독서진흥법안」과 적당히 타협하여 1994년 3월 24일에 제정한 법이다.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도서관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정말 허심탄회하게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다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가장 「도서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도서관 설립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50)의 제9조에 따라 제정·공표해야 하는 「대학헌장」에 반드시 종전 「대학설치기준령」에 있었던 수준 이상의 대학도서관의 설치기준이 삽입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51)의 제11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학교시설에 반드시 종전 「학교설비기준령」에 있었던 수준보다 높고, 정보사회에서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로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설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2조에 나타난 「대구광역시 사립도서관 등 활성화 기금」<sup>52)</sup>과 같은 내용이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국고보조·행정체계 구축·운영비 중 인건비와 자료비의 국고보조 등과 함께 「도시계획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선 사항도 지적하고 있다.<sup>53)</sup>

50) 대학설립·운영 규정. 1996년 7월 26일, 대통령령 제15127호

51) 초·중등교육법. 1997년 12월 13일. 법률제5438호 일부개정, 99. 8.31 법률제6007호.

52) <http://www.metro.taegu.kr/law/htmls/LAW/law7-1-18.html>.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1997. 1. 17 조례 제3190호

제2조(대구광역시 사립도서관 등 활성화 기금)

① 대구광역시는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의 활성화 및 이용자에 대한 봉사의 질 향상과 시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의 활성화 및 독서생활화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2. 독서진흥을 위한 구·군에 대한 보조

3. 기타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④ 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의 문화체육국장, 기금출납원은 문화협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1998. 10. 9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53) 오세형,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그러나 이러한 법이나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정책이나 활동이 여타의 부문들과도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나 규정 등도 면밀하게 검토, 종합적인 법규를 만들고 유지해 가야할 것이다.<sup>54)</sup>

### (3) 「국」 수준의 도서관행정 전담 부서 설치

도서관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법규와 함께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전담 부서라 할 수 있다. 현재 도서관 정책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산하 도서관박물관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립 및 시립, 군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화관광부의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도서관 정책 집행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국」 수준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 도서관계가 원하는 대로 문화부 초기와 같이 도서관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를 주장하고 문헌을 중요시 여기는 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국」 수준의 전담부서가 설치될 때까지는 현 단계의 행정담당 부서를 보다 강화하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집행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박물관과도 각 행정부처들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sup>55)</sup>

### (4) 도서관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

도서관 정보화는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넓은 의미의 전산화, 사무와 업무에 컴퓨터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화,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DB를 구축하는 등의 전자도서관을 일컫는다. 그 동안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정보화는 꾸준히 이루어져 괄목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 및 정보통신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1999. 1. 21. 법률 제5669호)」의 제33조에 나와 있는 「기금설치」는 다행한 일이다.

pp. 138-147.

54) 이용훈, 전계서. p. 14.

55) 이용훈, 상계서. p. 15.

한편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도서관정보화 정책은 2000년 3월 발표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2000년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도서관이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도서관 정보화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지시한 것을 계기로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마련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총 사업 규모가 2002년까지 3년간 3,068억원(국고 1,670억, 지방비 1,398억)으로 도서관 정책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획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도서관계, 관련 산업체, 행정기관 등에서도 매우 관심이 크다. 그러므로 이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56)</sup>

① 2002년까지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H/W) 조성 및 핵심적인 프로그램(S/W) 및 콘텐츠(C/W) 확충에 주력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디지털 출판물 및 S/W 등 민간의 개발 성과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②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학교도서관 및 문고는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sup>57)</sup> ③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는 도서관 소장 문헌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조속히 추진한다. ④ 전자책(e-book) 등 새로이 디지털로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2003년 이후 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58)</sup>

① 학교도서관(10,351관) 및 문고(3,763관) 정보화사업을 확대한다. 디지털 자료실을 활용한 창의적인 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② 디지털도서관 운영을 강화한다. 단편적인 디지털 정보를 수집, 체계화하여 가치있는 지식정보로 보존·활용한다. 전문사서에 의한 디지털 자료 분류센터 기능 및 관련 분야를 연구 개발한다. 전국 도서관정보망 운영의 거점 역할 수행한다. ③ 인터넷을 통한 안방자료실을 구현한다. 디지털 도서관이 제공하는 고품질 지식정보를 활용한다.

현재 이 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이를 손쉽게 획득·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부 DB 구축사

56) 문화관광부,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0. 3. p. 5.

57) 공공도서관 381관, 학교도서관 215관(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도서관) 및 우수문고 160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함.

58) 문화관광부, 전거서, p. 9.

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기존에 공공근로로 추진하던 정보화사업을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 305억원의 예산을 반영, 과학기술, 학술연구, 문화예술 등 전략적 DB구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에 10억원, 민간부문에서의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확충에 필요한 정보제공산업 육성에 200억을 지원하는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실질적인 집행력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sup>59)</sup>

그러나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지나치게 기술중심적이고 행정적 편익이나 외형적 성과를 우선한 것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도서관 행정체제를 개선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학술정보시스템 관련 우수업체<sup>60)</sup>의 참여로, 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도서관에 정보자원 즉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확보하고, 도서관 정보화를 직접 추진할 전문직원 즉 사서들을 확보하여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정보화라는 명분 하에 도서관에 컴퓨터 몇 대나 지원하는 것은 그 동안 독서실이었던 도서관을 이제는 PC방으로 만들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책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도서관 정보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귀중한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sup>61)</sup>

## 6. 결 론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관련 부서, 관련 지방자치 단체, 도서관 현장의 시스템과 사서, 이용자는 물론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정책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바람직한 도서관 정책이 없이는 도서관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정보문화 향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과 도서관계, 도서관학계, 도서관 관련 업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59) 연합뉴스 2000년 10월 12일자.

60) (주)아이네크, (주)IG인포넷, (주)오름정보 등.

61) 이용훈, 전계서. p. 27.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앞으로 도서관학계 및 도서관계는 국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문화와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한국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① 도서관 정책 자문기구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 ②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 ③ 「국」 수준의 도서관 행정 전담 부서 설치 ④ 도서관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 등과 같은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도서관 정책은 보편성, 효율성, 정체성, 접근성과 함께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정부서의 적절한 역할과 법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수반될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앙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계는 물론 도서관의 주체인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개발과 집행을 통하여, 21세기 문화의 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국가 차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도서관을 국가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기금관리기본법. 1991.12.31 법률 제4461호.

김세익. “도서관 정책의 빈곤을 비판한다”, 《신동아》 통권195(1980. 11). pp. 220-225.

문화관광부. 2001년도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2000.9)

문화관광부.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0.3)

성기선. “도서관 발전 정책 기본 방향”, 《문교행정》 95(1989.11). pp. 56-66.

연합뉴스 2000년 10월 12일자.

오세형.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96.

윤영대. “미국의 도서관 정책”, 《국회도서관보》 132(1978.6). pp. 11-16.

윤영대. “우리 나라 도서관 정책의 현황”, 《도협월보》 19권 8호(1978.10). pp. 7-10.

이경구. “도서관 정책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31권 5호(1990.9·10). pp. 216-221.

이만수.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 정책에 관한 고찰”, 『21사이버 라이브러리 컨퍼런스 자료집』. SOLARS 협의회, 2002. pp. 1-21.

이용남. “우리 나라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이용훈. “우리 나라 도서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 제55권 제4호(2000, 겨울). pp. 3-33.

최달현. “21세기를 향한 도서관 정책”, 《도서관문화》 32권 5호(1991. 9·10). pp. 296-304.

한국도서관협회. 『한국 도서관법 법령집』. 서울 : 동협회, 1998.

한성택. 한국도서관 정책의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육대학원, 1984.

Meyriat, J., *Rapport Sur les Techniques Moderns de Documentation dans les Science Social et leu Application aux Pays voie de Development*. Paris: ICSSD, 1962.

Butler, Pierce.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Public Library and Museum Act*. 1964. 7. 31.

Unesco ed. *Life-long Education and Asian Cultural Development*. Paris: Unesco, 1974.

<http://hyomin.dongeu.ac.kr/~yskim/wwwboard3/messages/470.html>.

<http://library1.nl.go.kr/본문서비스/도서관계/data9904.htm>.

<http://my.netian.com/~ilyjs/law.htm>.

<http://web.mic.go.kr/ck21/kor/part3/index12.html>.